

3-2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

1 목적

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,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, 기술훈련,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

2 근거법령

○ 장애인복지법 제41조, 동법시행령 제24조~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, 제32조

3 대여기준

가. 대여대상

○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

2019년 대상자 선정 기준								
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	8인이상
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	853,504원	1,453,264	1,880,016원	2,306,768원	2,733,520원	3,160,272원	3,587,024	1인 증가시마다
	초과	원 초과	초과	초과	초과	초과	원 초과	최소값은
	1,707,008	2,906,528	3,760,032원	4,613,536원	5,467,040원	6,320,544원	7,174,048	426,752원씩
	원 이하	원 이하	이하	이하	이하	이하	원 이하	최대값은
								853,504원씩
								증가

※ 소득인정액은 『2019년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』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·산정

- 보장가구(조사범위) :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사는 2촌이내의 가구원. 단, 부부 및 30세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동일 주거와 관계없이 포함.
- 다만,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(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), 보장기관 확인소득 및 사적이전소득, 부양비도 적용하지 않음

※ 자격제한

-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읍·면사무소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*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
- * 금융채무 불이행자, 신용회복중인 자, 개인회생 및 파산·면책자,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

나. 제출 서류

-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신청서 1부
-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(사업계획서 포함*) 1부
 - *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인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(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는 필요)
- 소득·재산 신고서 1부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
-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 -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
 - * 행복e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

다. 대여조건

○ 용자 조건

용 자 조 건		
한 도 액	이 율	용자기간
○ 무보증 대출 : 가구당 1,200만원 이하 (단, 자동차(생업용, 출퇴근용)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,500만원 이내)	금리 최고 연 3.0%	5년 거치, 5년 상환
○ 보증 대출 : 가구당 2,000만원 이하		
○ 담보 대출 : 담보 범위 내(5,000만원 이하) * 각 대출 유형별 세부요건 아래 참고		

※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의 대여는 한도액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체가격 이하를 용자
 ※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위한 자원 조달금리*가 3%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조달금리 적용
 * 조달금리 = 공자자금 용자금리(분기별 변동) + 취급수수료(고정 1.5%)

○ 무보증대출 요건('06. 4월~)

- 기존 대출금(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 합계액)이 2천만원 이하인 자 중,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

○ 보증인 요건('06. 4월~)

-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인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자(보증인 1명당 대출한도가 1,000만원이며, 대출 금액이 1,0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1명 추가)

※ 연간소득 확인서류 :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, 급여통장사본

(단, 3개월 이상 자동이체, 재직증명서 등 보조 증명 필요), 월 급여명세표(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만 인정) 및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기준 등

- 재산세 납입 확인서류 : 재산세 납부 영수증(증명서) 등

라. 대여제한
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인 장애인가구에 대하여는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상품을 이용하도록 안내

【참고】

- '15년 7월 1일부터 미소금융 '장애인자립자금 대출자금'이 신설되었으므로 유사사업간 대상 중복을 방지하고자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의 미소금융대여사업을 이용하도록 안내할 필요(별첨1)
- 이와 별개로 종전의 최저생계비 150% 이하(기준중위소득 60%) 장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의 대상(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제한)이었으나, 저소득층 생업자금대여사업 폐지로 인해 저소득층 생업자금 대여사업 대상 중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에 대해서는 미소금융을 이용하게 되었으므로('16.1월~)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60% 이하의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대상으로 흡수(별첨2)

-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대여 제한
- 1가구당 1회 한정(단, 기 대여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시 대여가능)

마. 대여신청 시기 및 접수처

-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중 신청
- 주민등록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
바.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

- 거치기간(5년) 중의 이자와 상환기간(5년) 중의 원리금(원금은 균등분할) 상환방법은 매월, 연 2회 또는 연 4회중 용자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

사. 대여목적

- 1)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(월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)

- 2)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(월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)

- 출퇴근용 자동차 : 본인 명의(가족과 공동명의 포함) 출퇴근용 자동차 단,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,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은 은행의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.

- * 자동차를 구입하기 이전에 대여신청을 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용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함.

-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

- 이륜자동차(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)로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(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)

- * 다만,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(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.59kw 미만인 것을 말한다)을 제외

- 콜밴(특수설비) :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

- 3)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

- 4)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

- 5) 사무보조기기 구입비

- 6) 자기개발 훈련비

- 7)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

- 8) 기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)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- * 장애인근로자 경우 1)항목 제외

※ 생활가계자금, 주택전세자금, 학자금 등의 용도로 용자 불가

4. 대여 기관 및 재원 등

가. 대여기관

○ 국민은행 지점

※ 농협은행과는 '17.12월말 업무협약 종결에 따라 대여기관에서 제외

나. 대여재원 : 공공자금 관리기금

5. 대여절차

- **(신청)** 자립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「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신청서」(사회복지 통합업무안내 별지 제1호 서식), 「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」(별지 제1호 서식)에 「자금대여 사업계획서」(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인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)를 첨부하고 「소득·재산 신고서」(사회복지 통합업무안내 별지 1호의2 서식) 및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(별지 제4호 서식)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·면·동에 신청한다. (2011.9.30 개인정보보호법 시행)

○ **(접수 및 기초조사)** 읍·면·동 담당공무원은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(단,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인 경우 장애인근로자 유무) 및 대여자금의 반환가능성을 고려하여 별첨 조사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작성하고, 신청 받은 서류와 함께 시·군·구로 송부한다.

○ **(요건심사 및 추천)**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소득·재산조사 및 사업계획서(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인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)와 별첨 조사서 심사를 거쳐 20일 이내에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추천한다. 이 때 자립전망 및 원리금 상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한다.

* 소득·재산조사는 통합조사관리팀에서 담당하고 대상자 결정은 사업과에서 수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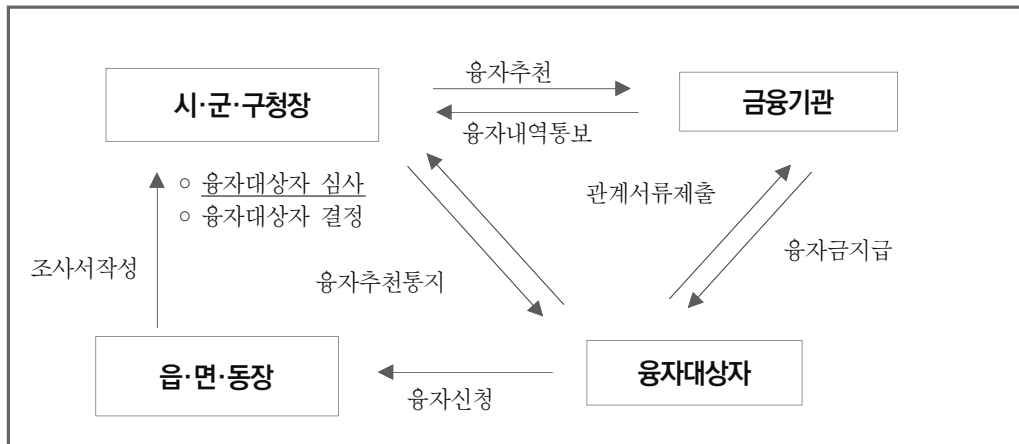
-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자립자금 대여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여목적(1~8)을 반드시 명시하여 「금융기관 자금대여 추천통보」 공문(대여추천자 이름, 생년월일, 주소(행정동까지), 대여목적(1~8), 추천금액 포함)을 시행하고, 대여 신청자에게는 「복지 대상자 자금대여 추천통지서」를 지체없이 통보한다. 아울러 대여 대상자로 추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※ 추천대상자 행복e음(사회복지통합망)에 철저 입력. 향후 금융기관 대여 결정 및 불가 대상 여부도 입력하여 대상자 사후관리 철저

【주의 사항】

- 시·군·구에서 동 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하여 추천 대상자의 대출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,
-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(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)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반드시 안내 요망

○ **(대출요건 심사 및 용자 결정)** 해당 금융기관은 대여 추천자에 대하여 대여내역(대여대상자, 대여금액, 대여일자, 대여기간(거치/상환), 이자율, 상환방법(상환주기) 등)을 해당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대여 여부 결정 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

6 행정사항

가. 자금 운용

- 시·도별 자금배정 없이 금융기관별 용자규모 내에서 운영
- 자립자금용자 이차보전 및 손실보전금('03. 4월~)
 - 보건복지부는 자립자금 용자금에 대한 수수료, 이차보전료(금리차이보전)와 손실보전금(무보증제 도입과 보증인요건 완화 목적) 및 담보대출에 따른 근거당권 설정비용을 취급 금융기관에게 지급

나. 용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

-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·군·구청장은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계획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지도·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 (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인 경우 제외)
 - 대여 받은 날로부터 2개월 후 최초 점검하고, 6개월 경과 후부터 연 1회 이상 점검

-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인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·군·구청장은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여 받은 자로부터 자동차등록원부(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신고필증)를 제출받아야 한다.
 - 이때 자동차등록원부 등 자동차구입여부 확인 시 지급받은 대여금과 자동차 구입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매매계약서 등)를 대조하여, 대여금 보다 자동차 구입가격이 더 낮아 차액이 발생한 경우 대여결정자가 즉시 그 차액을 용자기관의 해당 지점에 반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·군·구청장은 대여금 지급 1년이 지난 후 연 1회 이상 시·군·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에 의해 자동차 등록원부(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신고필증) 등을 확인하여 자동차 소유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.
-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·군·구청장은 특수설비 장착비용을 추가로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증빙자료(특수설비 부착사진 등)를 제출받아야 한다.
- 금융기관은 분기말 기준 대여자의 상환 및 대손처리 현황(별지 제7호 서식)을 다음 분기말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보건복지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연 1회이상 시·도를 통하여 시·군·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·군·구청장은 용자가구마다 「복지대상자 자금 대여관리 카드」(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별지 제9호 서식)를 비치하여 상환여부 및 운영실태 등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-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매년 1월 20일까지 대여대상자 사업유지현황(최근 3년간 대여대상자)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다. 업무의 협조

- 용자 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소재지(사업장)가 상이하고, 원거리인 경우 용자 신청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·군·구청장에게 한다.
- 이 경우 신청 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·군·구청장은 신청자의 사업장 소재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·군·구청장에게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지도·점검 확인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. 의뢰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·군·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
라. 반환명령(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)

-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·군·구청장은 대여신청 당시 목적대로 자립 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여한 자립자금을 용자받은 자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.
 - 자립자금을 회수하고자 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·군·구청장은 회수 주체인 용자기관의 해당지점 및 회수 대상인 대여자에게 상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.
- ※ 창업 후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나 출퇴근용 자동차를 대여받은 장애인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는 “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”에 해당하므로 위의 규정을 준용함. (단, 매출 및 이익발생 부진으로 사업을 유지함으로 인해 더 큰 손해를 입는 등, 부득이하게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, 이직 등 장애인근로자가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)

마. 전출입 관리

- 대여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신주소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·군·구청장에게 동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관리카드를 즉시 송부
- 담당공무원의 전출 또는 보직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인계·인수를 철저히 하여 용자사후관리에 차질 없도록 할 것

바. 대여실적 보고

- 시·도지사는 자립자금 대여실적(별지 제5호 서식)을 매 반기 다음달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.
-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자립자금대여실적(별지 제6호 서식)을 매월 말 현재로 익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.
- 취급금융기관은 “금융기관 자금대여 추천자”에 대한 대출실행 결과를 추천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·군·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게 한다.

<장애인자립자금 및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통합 운영 관련 참고>

1. 연도말('15.12.31까지) 신청자에 대한 처리방안

○ 장애인자립자금 신청

- 지자체 : 2015년 지침에 따라 추천여부 심사하여 추천결정
- 금융기관 : 대출심사 후 장애인자립자금으로 대여

○ 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 신청

- 지자체 : 2015년 지침에 따라 추천여부 심사하여 추천 결정
- 금융기관 : 대출심사 후 대출시기가 2016년인 경우 장애인자립자금으로 대여

2. 연도말('15.12.31까지) 추천자에 대한 처리방안

○ 장애인자립자금 추천

- 금융기관 : 대출심사 후 장애인자립자금으로 대여

○ 장애인근로자자동차구입자금 추천

- 금융기관 : 대출심사 후 대출시기가 2016년인 경우 장애인자립자금으로 대여

자금대여 사업계획서								
창업(구입) 형태 ¹⁾	생업자금 <input type="checkbox"/> 출퇴근용자동차구입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)							
사업명 (대여목적)								
사업 내용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존사업투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업종변경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동차구입	사업장 위치		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(m ²)				
		임대내용 (사업장)		<input type="checkbox"/> 전 세				원
				<input type="checkbox"/> 월 세				원
				<input type="checkbox"/> 기 타				원
				<input type="checkbox"/> 보증금				원
		차량내용 <input type="checkbox"/> 생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출퇴근		<input type="checkbox"/> 신 차	년식,		원	
<input type="checkbox"/> 중고차	년식,			원				
기술보유	현재 종사직종	자영업	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		자영업			
		근로자			근로자			
		기 타			기 타			
		경력 년			경력 년			
자격증 혹은 보유기술	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		종류					
사업 일정	계 획 (창업준비/자금사용내역 등)							
사업자금 운용	총 사업 소요자금			예상소요 경비내역		예 상 매출액	- 월별 ()	
	신청용자금 액						- 년매출액 ()	
	부족자금 확보	<input type="checkbox"/> 확보 <input type="checkbox"/> 미확보						
장애인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	기기유형			자기개발 기능개발 훈련비	훈련명			
	구입금액				훈련목적			
					훈련비용			

※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.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

[별지 제2호 서식]

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(추천) 통지서					유효기간	
					결정일로부터 6개월간 (단, 장애인자동차 구입자금 2개월간)	
용 자 자	성 명		생년월일		전화번호	
	주 소					
용자기관명					전화번호	
<p>귀하를 자금대여 대상으로 결정하고 위 용자금융기관에 통보하였으니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 자금대여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</p> <p>당초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6조 규정에 의거 용자된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</p> <p>문의전화번호 : _____ _____ 귀하</p>						
구비 서류	- 아래 ①, ② 중 택 1 ① 본인 및 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부영수증 사본 1부 ② 본인 및 보증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또는 월급명세표(소속기관장 확인) 기타 구비서류 및 연대보증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
※ 자금 대여 결정통지와는 별개로 해당 금융기관 여신규정(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)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.						
※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(추천) 통지서를 받은 금융기관에서는 자금대여 결정 결과(용자금액, 용자일자, 용자기간(거치/상환), 이자율, 상환방법(상환주기), 용자불가결정시 사유 등) 를 해당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 요망						

※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대여 결정통보서는 공문시행으로 같음.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

[별지 제3호 서식]

조 사 서

대여신청인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	
대여목적				
장애인근로자 유무 (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인 경우)				
대여자금의 반환가능성				
구체적 지도계획				
조사자의견	결과	1. 적합 2. 부적합 3. 기타		
	사유			
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.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조사자 소속 직 급 성 명 (인)</p>				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				

[별지 제4호 서식]

【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】

■ 기본 개인정보 수집·이용
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	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추천 및 용자(관리)에 관한 사무
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	10년
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	성명, 전화번호, 주소, 장애유형 및 등급, 소득재산 등
고유식별 정보	주민번호, 외국인 등록번호
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	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
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 고유식별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

■ 민감정보 수집·이용

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	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추천 및 용자(관리)에 관한 사무
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	10년
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	장애 상태, 등
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	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1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

■ 개인정보 제3자 제공

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	용자취급 금융기관, 사회복지통합망 시스템(대여사업관리, 소득 재산조사 등)
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	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에 관한 사무
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	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장애등급, 소득 및 재산 등
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	10년
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	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

※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,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,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※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

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

개인정보 동의 확인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.	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함 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하지 않음
------------------------	--

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고 위의 사항을 확인 합니다.

년 월 일

동의인 : (서명 또는 인)

()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[별지 제6호 서식]

년도 월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실적

○○ 은행

- 금월 배정액 : 천원 (배정일자 : . . .)
- 배정액 누계 : 천원
- 미대출 잔액 : 천원

(단위 : 천원)

시 도 별	성 별	대 출 실 적							
		계		무보증		보증		담보	
	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누계	남								
	여								
	계								
당월 합계	남								
	여								
	계								
서울									
부산									
대구									
인천									
광주									
대전									
울산									

<별첨1>

【【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 중 「취약계층자립자금」 안내】】

I. 제도 개요

-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생계자금 등을 지원
- 지원대상 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①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자 (무등급, 0등급 포함) 또는 ②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자 또는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
- 대상 제한자 : ①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*, ② 제조업(5인미만제외), 금융·보험업, 사치성향적 업종, ③ 채무면탈죄, 재산 은닉, 도피, 기타 책임재산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재산에 가등기, (가)압류, 가처분,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자 등

*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

- 신용회복지원자 중 9개월이상 성실 납입자
- 개인회생 신청자 중 면책 결정된 자
- 개인파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

상 품	장애인자립자금
대출한도	최대 1,200만원
대출기간 및 상환방법	<u>최대 6년, 원리금균등분할상환</u>
대출금리	연 3.0% 이내

- 자금용도 :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4조에 따른 생업자금, 생업이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,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,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, 사무보조기기 구입비, 그밖에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II. 이용방법 문의

- 서민금융진흥원 (국번없이1397, 홈페이지 www.kinfa.or.kr)

※ 위의 안내사항은 2015.12.31. 기준 유효한 사항임

<별첨2>

【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 중 「미소금융 창업·운영자금」 안내】

I. 제도 개요

- 제도권 금융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·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·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
- 자격요건 : ①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자(무등급, 0등급 포함) 또는 ②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자 또는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
- 대상 제한자 : ①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자*, ② 제조업(5인미만제외), 금융·보험업, 사치성향적 업종, ③ 채무면탈죄, 재산은닉, 도피, 기타 책임재산 감소 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 ④ 재산에 가등기, (가)압류, 가처분,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자 등

*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

- 신용회복지원자 중 9개월이상 성실 납입자
- 개인회생 신청자 중 면책 결정된 자
- 개인파산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자

상 품	사업운영자금	창업자금
대출한도	2천만원	7천만원
대출기간 및 상환방법	<u>최대 5.5년, 원리금균등분할상환</u>	<u>최대 6년, 원리금균등분할상환</u>
대출금리	연 4.5% 이내	

※ 기존의 미소금융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 생계자금 지원(최대 500만원 대출한도, 최대 5년 대출기간)

II. 이용방법 문의

- 서민금융진흥원 (국번없이1397, 홈페이지 www.kinfa.or.kr)

※ 위의 안내사항은 2015.12.31. 기준 유효한 사항임